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추경) Micro DIPS(핵심 도메인 AX, AX 컨소시엄 창업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우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추경)」 내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및 고성장 분야(AI 등) 집중 지원을 위한 「Micro DIPS(핵심 도메인 AX, AX 컨소시엄)」에 참여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중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구성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공고일정(안)
<b>1 Micro DIPS</b>	<b>고성장 분야(AI, 팹리스 등) 집중 지원 및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b>		
AI 핵심 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I 스타트업 (sLLM,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모집완료
	지원규모	·5개사, 기업당 1.5억원 내외 (1년)	
<b>핵심 도메인 AX (추경 예산)</b>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I 스타트업 (5대 도메인)	<b>★공고★ (추경)</b>
	지원규모	·50개사, 기업당 최대 1.0억원 (5개월 이내)	
AX 스타트업 육성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모집완료
	지원규모	·15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 (1년)	
<b>AX 컨소시엄 (추경 예산)</b>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5대 도메인)	<b>★공고★ (추경)</b>
	지원규모	·40개사, 기업당 최대 1.0억원 (5개월 이내)	
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AI)	모집완료
	지원규모	·10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 (1년)	
팹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팹리스 스타트업	모집완료
	지원규모	·30개사, 1억원 ~ 2.5억원 내외 (1년)	
<b>2 DIPS</b>	<b>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준비</b>		
DIPS 창업사업화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별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모집완료
	지원규모	·182개사, 기업당 최대 3억원~6억원 이내 (3년)	
<b>3 Beyond DIPS</b>	<b>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현지 안착 촉진</b>		
Beyond DIPS 창업사업화	지원대상	·DIPS를 졸업한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모집완료
	지원규모	·15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 ~ 10억원 이내 (2년)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 산업 생태계' 내 특정 산업, 기업 등에 AX 공급으로 생산성 및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 지원 대상 : 창업 10년 이내 5대 도메인 특화 AI 스타트업

< 5대 도메인 분야 >

바이오 AI	콘텐츠 AI	제조 AI	금융 AI	스마트농업 AI
--------	--------	-------	-------	----------

- ① 핵심 도메인 AX : 5대 도메인 AI 핵심기술 보유 기업
- ② AX 컨소시엄 : 5대 도메인 수요기업과 AX 프로젝트\*를 공동 수립한 AI 스타트업 (\* 수요기업과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콘텐츠, 바이오, 제조, 금융, 스마트농업의 5대 도메인에서 수요기업(스타트업, 대·중견·중소, 공공기관 등)과 AX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한 AX 확산 과제

< AX 컨소시엄 예시 >

구분	수요기업	+	AI 스타트업	=	AX 결과물
콘텐츠 AX	신문사(뉴스)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이미지, 동영상)		AI를 통해 뉴스(텍스트)를 웹툰, 동영상 형태로 전환하여 새로운 뉴스 소비문화 창출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25.8월~12월)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AI 기술개발, 판로(신규 거래처 확보 등) 등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특화 프로그램 지원

구분	세부항목	주요 내용	비고
핵심 도메인 AX	사업화 자금	· AX 모델 개발, 기술 고도화 비용 (1.0억원)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AX 컨소시엄	사업화 자금	· 5대 도메인 수요기업 협업 비용 (1.0억원)	
공통 프로그램		· 데이터 실증 지원, 수요처 발굴·연계, 컨설팅 등	

\* 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 여부는 [붙임 2]을 통해 확인 필요

\*\* Micro DIPS ① 핵심 도메인 AX, ② AX 컨소시엄은 동시 신청 및 수행 불가

□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과제별 최대 1.0억원)

구분	바이오	콘텐츠	제조	금융	스마트농업	합계
핵심 도메인 AX	20개사	10개사	10개사	5개사	5개사	50개사
AX 컨소시엄	10개사	20개사	5개사	5개사		40개사
계	30개사	30개사	15개사	15개사		90개사

\* 분야별 신청·모집 결과, 평가 현황 등에 따라 지원 규모(T/O)는 일부 변동 가능

## 2 세부 지원 내용

### 1 창업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 사업비 70% 미만	① 핵심 도메인 AX : 최대 1.0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제작, 지적권 획득, 기술·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li> <li>★ 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붙임2 참고)</li> </ul>
자기 부담 사업비 30% 이상	② AX 컨소시엄 : 최대 1.0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메인 5대 분야 수요기업에서 도입가능한 제품·서비스의 개발·고도화에 한하여 집행</li> <li>★ 지급되는 정부지원사업비는 AI 스타트업에만 지급되며, AI 스타트업에서 집행</li> <li>★ 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붙임2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사업비)의 <b>30% 이상</b> 발생 (현금·현물 제한 없음)</li> <li>★ 협약체결 시 <sup>1)</sup>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sup>2)</sup>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li> <li>★ <b>현물로 보유·구매 예정인 기자재의 경우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10%로 계상</b></li> <li>* 잔존가치는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구매금액의 20%만 인정, 5년 초과 시 10%로 계상</li> <li>★ 자기부담사업비는 배정되는 정부지원사업비에 따라 산출</li> <li>★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 금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li> </ul>	

예시	구분	정부지원사업비 (70% 미만)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총 사업비 (100%)	
	핵심 도메인 AX	1.0억원	69.8%	0.65억원	30.2%	1.65억원	100.0%
AX 컨소시엄	1.0억원	69.8%	0.65억원	30.2%	1.65억원	100.0%	

### 2 초격차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증	·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AI 기술·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인·허가	· 국제 표준과 기술·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지원
	집적단지	· 광주 AI 집적단지 내 인프라(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 이용 지원

### 3 후속 지원

후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년도 DIPS, Beyond DIPS 신청 시, <b>우대 혜택</b> 제공 (우대 선정, 가점 등)</li> <li>★ (DIPS) 3년간 최대 6억원(평균 4.5억원), (Beyond DIPS) 2년간 최대 10억원(평균 7.0억원)</li> </ul>
-------	---

※ 프로그램은 선정된 스타트업 현황, 지원수요 등에 따라 변경·고도화 가능

※ 후속지원(차년도 DIPS 우대)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DIPS 공고를 통해 안내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 신청 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7월 12일 이후 창업한 기업

-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신청 제외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일반유희주점업
2. 무도유희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④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재참여 불가 사업 현황 >

1.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
2. '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3. '24~'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⑤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자(기업)

< 주요 참고사항 >

1. [참고1]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참고
2.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예 2024년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 신청·선정 가능)
3.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여부, 사업연도,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⑥ 수요기업 없이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한 자(기업) ※ AX 컨소시엄에 한하여 적용

< 주요 참고사항 >

- AX 컨소시엄에 신청하는 AI 스타트업은 수요기업과 협업 계획을 공동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업계획서 내 해당 내용 필히 기재하여야 함.

-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⑧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⑨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⑩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 4 접수방법 및 평가 절차

□ 접수기간 : '25년 7월 11일(금) ~ 8월 1일(금), 15: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유행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를 위한 자료(국.영문)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현황 >

구분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별도 파일 제출 X
②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최종 단계)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③ 발표 자료		양식 자율
④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법인 사업자에 한하여 온라인 제출
협약체결 확약서		선정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 등 미리 진행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 **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하여 평가진행**
- ◆ 온라인 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접수 완료 처리
-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 ◆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의 계정으로 신청**하여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 ◆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술분야**는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변경 절대 불가**
- ◆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평가절차 : 1단계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2단계 발표평가 (1배수)

- ① **서류평가**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② **발표평가** : 별도 평가단 대상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기업역량, 사업계획을 검증하여 '25년 Micro DIPS 후보기업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일정(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일정(안)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8월초
1단계 서류평가	주관기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	8월초
2단계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8월중
정부지원사업비 배정	주관기관	· 선정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비 배정	8월말
협약체결	주관기관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 등	8월말

\* 창업기업 접수 및 평가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평가지표** : ①핵심 분야 사업화와 ②AX 육성 방향, 대상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 AI 스타트업 검증

① **핵심 도메인 AX** : 요건검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초격차 3대 평가지표(기술, 혁신, 성장) 기반 스타트업 검증 및 선발

< 핵심 도메인 AX 평가 지표 구성(안) >

구분	세부항목	평가내용
서류 및 발표평가	기술성	·글로벌 기술 대비 보유 기술 관련 우수성, 차별성 등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글로벌 기술우위 수준
		·조직(인력), 협력 기관(기업) 등 기술개발(고도화) 가능성
	혁신성 성장성	·동·이종 기술, 제품과 융합 가능성 및 기술개발 역량
		·보유 기술, 제품, 역량 등에 대한 국내, 글로벌 투자 수요
		·글로벌 투자유치 및 성장 로드맵, 현지 진출 전략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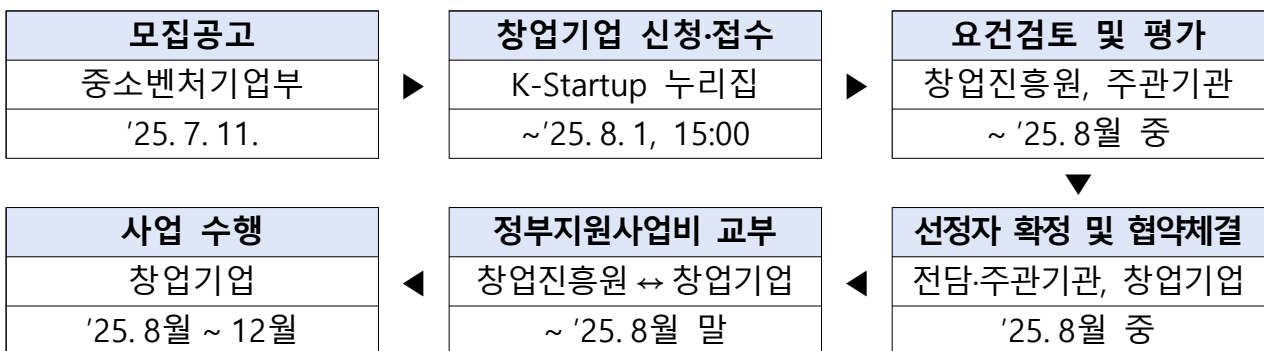
② **AX 컨소시엄** : 수요기업과의 공동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술 역량 및 도메인 적용 및 확장성 등 검증, 평가

< AX 컨소시엄 평가 지표 구성(안) >

구분	세부항목	평가내용
서류 및 발표평가	기술성	· AI 스타트업 보유 원천기술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수준
		· AX 프로젝트 모델에 대한 산업 내 도입 수요 규모
		· AX 프로젝트 모델에 대한 산업 외 도입 수요 규모
	프로젝트 우수성	· AI 스타트업 보유 기술의 글로벌 수요 및 확장 가능성
		· AI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기반 글로벌 성장 가능성
		· AX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및 글로벌 적용 가능성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는 기술 주관기관에서 기술·산업별 특성에 따라 수립

□ **사업 운영 일정(안)**



\* 창업기업 접수·평가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정보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탈락)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협약 취소** 가능
- ② 사업 신청 내용이 **공고, 규정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내 허위 기재, 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선정 제외**
- ③ 선정자(기업)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④ 고의·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전액) 등의 제재 부여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시행

⑤ '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이 불가

※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연도가 2025년이 아닐 경우('24년 등),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확약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협약체결 가능, 기한 내 협약체결 확약서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⑥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요건(자격, 제외 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 선정 이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며,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조치 가능

⑦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② 평가 중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의 결과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에 평가 결과(서류통과·탈락)에 관계 없이 개별 안내

- ③ 발표평가에는 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정 사유로 인해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주관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한 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참석(발표)이 가능하나, 대리 참석자는 제출한 사업계획(과제)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내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대표자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 ④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발표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⑤ 주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며, 국민평가단 운영 시 발표평가장 내 평가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국민평가단은 평가 결과에는 관여할 수 없고, 평가 과정 내 발생 가능한 부정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에 한하여 수행

- ⑥ 발표평가의 일정 및 장소 등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⑦ 이의신청은 전체 평가 과정의 종료 후 절차, 일정, 방법 등은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창업기업당 1회에 한하여 가능

- ⑧ 선정 후보 기업 중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창업기업에 한하여 심의 후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 예정

###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①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요건(자격, 제외대상) 및 유사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 ②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지급,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 집행·관리

\* 정부지원사업비는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 집행·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 ③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중단,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④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는 등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⑥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부정수급(정부지원사업비 횡령, 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 가능
- ⑦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 취소

#### ④ 선정자(기업)의 의무

##### < 사업 수행 관련 >

-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 협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중간 시점 내 협약 종료 불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목표 달성을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운영 요령, 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및 모집공고문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숙지와 준수를 통한 사업 완수
- 정부지원사업비를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이 안내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 목적에 맞도록 집행·사용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수정·보완 안내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의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성실한 참여
- 사업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분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며, 분실, 도난,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대하여 고지

#### < 사업 종료 이후 >

-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창업진흥원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의 집행 내역·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 포함)의 보관(5년간)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 < 기타 사항 >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고도화를 위한 자료 요청, 간담회 참석, 정책 제언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 6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062-610-3949, 062-610-3945)

# 붙임 1

# 창업 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2025년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

※ 사업 목록은 2025년 사업 기준이며, 참여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임에도 사업 연도가 다른 경우(23년, 24년 등) 동시 수행 가능

※ 아래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본예산, 추경예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본예산, 추경예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3	· 창업도약패키지(본예산, 추경예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본예산, 추경예산 포함) * ① Micro DIPS(핵심사업화, AX육성, 지역주력산업 연계 AX), ② DIPS, ③ Beyond DIPS	중소벤처기업부
5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창업사업화,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6	·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8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9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0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1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2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3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4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5	· 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엑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3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4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5	·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6	·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7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